

【 15 】 양주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

제출연월일 : 1999. 4. 24.

제 출 자 : 양 주 군 수

제안이유

- 도시계획 도로 개설등으로 도로주변 토지가 이익을 받는 경우 수익자 부담금을 징수토록하는 도시계획법 제65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함.

주요골자

“동 조례 폐지”

양주군조례 제 호

양주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

양주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第64條 (公共施設管理者의 費用負擔) ①都市計劃事業의 施行者(行政廳이 아닌 者를 제외한다)는 그 施行者 이외의 者가 設置·管理하는 公共施設이 都市計劃事業으로 인하여 顯著한 利益을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都市計劃事業에 소요된 費用의 一部를 그 公共施設의 管理者와 協議하여 그에게 이를 負擔시킬 수 있다. 이 경우에 그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한 때에는 建設部長官이 당해 公共施設의 主務部長官의 의견을 들어 이를 決定한다.

②都市計劃事業의 施行者(行政廳이 아닌 者를 제외한다)는 共同溝를 設置하는 경우에는 다른 法令에 의하여 그 共同溝에 收容될 施設의 設置가 義務로 된 자에게 共同溝의 設置에 所要되는 費用을 負擔시킬 수 있다.

③第2項의 費用負擔·負擔比率·負擔方法 및 共同溝의 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第65條 刪除 (89.12.30 法4175)

第66條 (補助 또는 融資) ①行政廳이 施行하는 都市計劃에 관한 基礎調查 및 都市計劃事業의 施行에 所要되는 費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國庫에서 補助하거나 融資(都市計劃事業에 限한다)할 수 있다.

②行政廳이 아닌 者가 施行하는 都市計劃事業에 所要되는 費用의 一部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이를 補助할 수 있다.

③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開發豫定區域의 造成事業을 위하여 施行者가 土地를 買收하는 경우에는 融資할 수 있다.

第67條 (受益金등의 使用制限) 第8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廳인 施行者에게 諸屬된 用途가 穢止된 土地에 대한 處分으로 인한 受益金은 都市計劃事業 이외의 目的에 사용할 수 없다. <改正 89.12.30 法4175>

第5章 都市計劃委員會

第68條 (中央都市計劃委員會) 都市計劃의 決定과 기타 都市計劃에 관한 重要事項을 奏議하여 이에 관한 調查 研究를 하게 하기 위하여 建設部에 中央都市計劃委員會(이하 “中央委員會”라 한다)를 둔다.

第69條 (組織) ①中央委員會는 委員長·副委員長 各 1人과 委員 15인 이상 20인이 내로 構成한다.

0. 대한민국 법률 명령집

第32編 建 設 第 7 章 都市 都市計劃法

業으로 인하여 顯著한 利益을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都市計劃事業에 소요된 費用의 一部를 그 公共施設의 管理者와 協議하여 그에게 이를 負擔시킬 수 있다. 이 경우에 그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한 때에는 建設部長官이 당해 公共施設의 主務部長官의 意見을 들어 이를 決定한다.

②都市計劃事業의 施行者(行政廳이 아닌 者를 제외한다)는 共同溝를 設置하는 경우에는 다른 法令에 의하여 二 共同溝에 收容될 施設의 設置가義務로 된 자에게 共同溝의 設置에 所要되는 費用을 負擔시킬 수 있다.

③前項의 費用負擔·負擔比率·負擔方法 및 共同溝의 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第65條 (受益者負擔金) ①都市計劃事業의 施行者는 그가 施行한 都市計劃事業으로 인하여 顯著히 利益을 받는 자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利益의 범위안에서 당해 都市計劃事業에 所要된 費用의 일부를 負擔시킬 수 있다. 다만,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財產(公共施設을 제외한다)으로서 소用 또는 公公用에 提供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前項의 경우에 그 受益者負擔金이 再開發事業 또는 開發豫定區域의 造成事業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事業의 施行區域안의 土地나 建築物로서 이를 納付하게 할 수 있다.

③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을 納付할 者가 이를 納付하지 아니할 때에는 都市計劃事業施行者は 國稅 또는 地方稅滞納處分과 同樣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. 다만, 施行者が 行政廳이 아닐 때에는 第51條第 3 項 및 第 4 項의 規定을 準用한다.

④第 1 項의 受益者負擔金 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그 事業施行者가 建設部長官인 경우에는 建設部令으로, 市長·郡守 또는 道知事인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, 行政廳이 아닌 者인 경우에는 規約으로 정하되 規約은 建設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.

第66條 (補助 또는 融資) ①行政廳이 施行하는 都市計劃에 관한 基礎調查 및 都市計劃事業의 施行에 所要되는 費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二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國庫에서 補助하거나 融資(都市計劃事業에 限한다)할 수 있다.

②行政廳이 아닌 者가 施行하는 都市計劃事業에 所要되는 費用의 一部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이를 補助할 수 있다.

③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開發豫定區域의 造成事業을 위하여 施行者が 土地를 買收하는 경우에는 融資할 수 있다.

第67條 (受益金등의 使用制限)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徵收한 受益者負擔金 및 第83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廳인 施行者에게 歸屬된 用途